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 내용과 의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KOREAN NGOs' NETWORK against GLOBAL POVERTY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 내용과 의의

들어가면서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성훈)	1
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비전과 개요	3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황원규)	
가) Post-2015 개발목표 설정을 위한 글로벌 논의 과정	
나) UN 공개작업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다)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내용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역별 내용	9
1) 사회발전 부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김태균)	
2) 경제개발 부문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황원규)	
3) 환경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박사 허태욱)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기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김태균) ...	36
4.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과제와 전망	42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성훈)	

들어가면서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사적 전환의 시기이다. 2015년은 지난 10여년간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의 나침반과 이정표 역할을 해온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마무리되는 해이다. 동시에 2015년은 MDGs를 대체하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채택하는 새 출발의 시기이기도 하다. 유엔은 2015년 9월 제70차 유엔총회 기간 중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개발목표를 정식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0년 MDGs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토대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온 'Post-2015 개발의제' 과정은 일단락되고 유엔과 각국 정부는 새로운 목표에 따른 지표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 The Future We Want'를 모토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발전목표가 '과감하고 야심찬, 그리고 인류의 열망을 반영하고 실질적'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MDGs와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악화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의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Multiple crisis)의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전목표는 변혁적이고 체제전환 (transformation)을 수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엔 사무총장은 특히 종합보고서에서 2015년이 세계의 지도자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빈곤을 종식하고 경제시스템을 변혁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역사적 기회임을 역설해 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발표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에서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 (Leave No One Behind) 포용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 (Life of Dignity for All)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 구축과 이행 수단 및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지구적 실천 약속(Universal Compact)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Post-2015 개발의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 특히 유엔은 지속가능발전이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인류사회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성장, 불평등과 경제적 배제를 수반하는 경제성장, 새로운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을 탈피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 형평과 사회적

통합 및 안정에 기여하는 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감하고 야심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정부와 시민사회 및 기업 등 모든 사람의 참여와 기여가 필수적이다.

‘Post-2015 개발의제’ 과정에 시민사회는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국제시민사회는 Post-2015 관련 국제 정책 애드보커시 네트워크인 Beyond 2015와 홍보와 캠페인 네트워크인 action/2015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목표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시민사회 또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세 협의체가 Beyond 2015 Korea와 action/2015 Korea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와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본 보고서는 2015 년 1 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개발목표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2014 년 7 월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채택한 17 개의 예비목표안과 2014 년 12 월 유엔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action/2015 Korea 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임을 밝혀둔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개요와 비전

1)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가) Post-2015 개발목표 설정을 위한 글로벌 논의 과정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UN 및 OECD의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준비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Post-2015 논의 과정은 유엔이 중심에 서서 유엔산하기관, 유엔이 지정한 전문가 그룹, 정부간 협의 채널, 시민사회의 참여는 물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토론 및 의견조사를 통해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다년간에 걸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이래 Post-MDGs 목표설정은 크게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다. 첫 번째 줄기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유엔 경제사회국(DESA)이 주도하는 흐름이다. 이곳에서는 UN System Task Team이 결성되어 Post-2015 수립을 위한 통합구조/framework를 제시(아래 보고서 ②번)하고, 사무총장이 위촉한 27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유엔고위급패널을 결성하여 보고서(보고서 ③번)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온라인 참여채널을 구축하여 범세계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유엔총회에 사무총장의 보고서(보고서 ④번)를 제출하였다.

다른 한 줄기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에서 준비한 Rio+20 결과보고서(보고서 ①번)를 바탕으로 유엔총회(UNGA)가 위촉한 공개작업반활동을 통해 보고서(보고서 ⑤번)를 작성하여 2014년 8월 총회에 제출하였다.

2013년 유엔정기총회는 사무총장에게 이 두 갈래의 흐름을 통합한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유엔 사무총장의 SDGs 종합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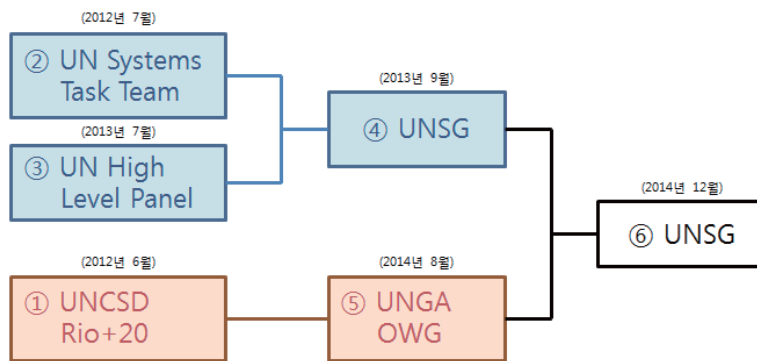
그 동안 유엔 및 SDGs 수립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보고서를 발표된 일정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2012년 6월: 『The Future We Want』 (UNCSD Rio+20)

- ② 2012년 7월: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UN Systems Task Team)
- ③ 2013년 7월: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UN High Level Panel)
- ④ 2013년 9월: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UNSG)
- ⑤ 2014년 8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GA Open Working Group)
- ⑥ 2014년 12월: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UNSG Synthesis Report on the Post-2015 Agenda)

이 과정을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 체계로 정리한 Post-2015 목표 설정과정



나) 유엔 공개작업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2014년 7월 발표된 유엔 공개작업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7개의 목표는 크게 일반적 공동의 목표에서 해당하는 빈곤종식 (1번), 기아종식 (2번) 및 불평등 감소 (10번)과 사회개발, 경제개발 및 환경보존의 분야별 목표 그리고 책임성 매카니즘과 이행기체에 해당하는 책임성과 거버넌스(16번)와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17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일반적 목표	빈곤과 기아 종식(1, 2)과 불평등 감소 (10)		
영역별 목표 내용	사회발전 (3, 4, 5, 11)	경제개발 (8, 9, 10, 12)	환경 (6, 7, 13, 14, 15)
이행 기제	책임성과 거버넌스 (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7)

그러나 실제 목표의 내용인 세부목표를 보면 사회발전, 경제개발과 환경이 중첩되는 분야가 적지 않지만 본 보고서는 3, 4, 5, 11번 목표를 사회발전, 8, 9, 10, 12번 목표를 경제개발 그리고 6, 7, 13, 14, 15번 목표를 환경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한편 UNEP는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도시하고 있다.



다)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내용

유엔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는 현재의 세계를 혼란 속에 빠진 고장 난 세상이란 인식 하에(157조), 적절한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 뿐 아니라 지구 환경 전체가 더욱 파편화되고 투쟁에 휩싸일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다.(157조) 그러나 전 지구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할 경우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도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1조, 2조, 160조, 161조) 그러기 위해서 지속가능하고, 존엄성 있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변혁(transformation)의 도입이 시대적 소명이고, 이 보고서의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다.(4조, 160조) 이를 통해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Leave no one behind) 인간으로서의 존엄스런 삶(life of dignity for all)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을 구축하는데 전 세계가 함께 동참(universal call to action)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1장, 161조)

구체적인 변혁의 수단으로 종합보고서는 유엔총회에서 위촉한 공개작업반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본 축으로 하면서, Post-2015 목표설정을 위한 변혁적 접근방식(transformational approach)에 의거하여 6가지 필수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즉, 존엄(dignity),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환경(planet), 정의(justice), 파트너십(partnership)이 그것이다.

- ① 존엄: 빈곤 종식 및 불평등 대처
(Dignity: to end poverty and fight inequalities)
- ② 사람: 건강한 삶, 지식 및 여성과 아동의 포용
(People: to ensure healthy lives, knowledge, and the inclusion of women and children)
- ③ 번영: 강하고 포용적이며 변혁적인 경제성장
(Prosperity: to grow a strong, inclusive, and transformative economy)
- ④ 지구환경: 모든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호
(Planet: to protect our ecosystems for all societies and our children)
- ⑤ 정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및 강력한 제도 구축
(Justice: to promote safe and peaceful societies, and strong institutions)
- ⑥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세계적 연대 촉진
(Partnership: to catalyse global solida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종합보고서는 이 밖에 Post-2015 목표설정을 위한 이행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으로 개발재원의 동원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고, 기술, 과학,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하여 기관역량으로 환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ost-2015 목표 이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역별 내용

1) 사회발전 부분

가)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00년 합의된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결합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새천년개발목표가 사회개발에 집중되었다는 한계점을 포용적 경제성장, 지속가능발전, 평화와 안보를 주요 핵심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주제별 층위를 보완하였다. 또한 새천년개발목표가 개도국에 초점이 맞춰진 목표였다면,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과 선진국, 즉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정된 목표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사회발전은 목표 2, 3, 4, 5, 11으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목표들은 다시 세부목표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발전 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와 유사하게 빈곤, 보건, 교육, 여성의 4대축이 기본 골격으로 구조화되었다. 각각의 사회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해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발전 관련 목표

-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나) 사회발전 목표별 내용과 특성

■ 사회발전 목표 2: 기아종식과 식량안보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 2.1. 2030년까지 기아종식,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중 안전하고, 고영양의 충분한 식량 공급 보장
- 2.2. 아동의 발달저해와 신체쇠약을 방지하도록 202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 달성을 포함한,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과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 필요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고용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생산량과 소규모 식량생산자의 소득을 2배로 증대
- 2.4. 2030년까지 생산성과 실질적인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후변화와 홍수, 가뭄 등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가능식량생산 시스템을 보강하고 회복력이 확보된 농업활동을 이해
- 2.5. 2020년까지 국가, 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식물 및 종자은행을 통한 씨앗, 농작물, 가축 및 이와 관련 있는 야생종의 유전자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적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 보장되는 혜택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
 - 2.a.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농촌 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도국 농업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2.b. 도하개발회의의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모든 종류의 농업수출보조금과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시장왜곡 문제를 시정하고 예방
 - 2.c. 식료품 시장 및 파생시장 기능 보장과 급격한 식품가격변동을 제한하기 위한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한 기준 마련

• 목표 2는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그리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30년까지 기아를 근절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를 비롯한 농업관련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극심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MDGs와 달리 기아와 식량에 관련된 농업기술 및 농산물 수출 보조금까지 단순한 규범적 차원의 목표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기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기술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 사회발전 목표 3: 보건과 웰빙증진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산모사망률을 0.07% 이하로 경감
 - 3.2. 2030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이 가능한 사망률을 종식
 -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열대성 질환의 종식 및 간염, 수계감염 질병, 기타 전염병 근절
 - 3.4. 2030년까지 전염병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산사망률을 예방과 치료를 통해 1/3로 경감하고 정신건강과 웰빙을 증진
 - 3.5. 마약류 약물 남용과 알콜섭취를 포함한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 3.6.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50%로 경감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와 교육, 국가전략과 프로그램에 출산보건 연계 등을 포함한 성건강 및 출산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 보장
 - 3.8.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고, 양질의 기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기초 의약품 및 백신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평등한 보건 혜택 제공
 - 3.9. 유독화학물질과 공기, 토양,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에서 야기되는 질병과 사망을 실질적으로 경감
 - 3.a.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강화
 - 3.b.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의약품과 백신 관련 R&D 지원, 공중보건보호 지식의 이동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 보장하고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한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른 저렴한 기초 의약품과 백신 제공
 - 3.c. 개도국, 특히 최빈국과 SIDs를 대상으로 보건재원, 보건인력의 육성, 훈련, 채용의 확대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내 및 국외 건강위험의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 목표 3은 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사람의 웰빙이 증진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이와 관련된 세부 목표가 9가지로 나열되어 있다.

• 다른 목표들과 마찬가지로 2030년을 목표해로 상정하고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목표치를 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슈로는 산모사망률, 영유아사망률, AIDS·결핵·말라리아·간염·전염병 근절, 마약남용방지, 도로교통사상자, 출산서비스, 성건강, 의약품 및 백신 공급 등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 세부규정으로 기존의 보건관련 주요 협정들, 즉 <WHO담배규제기본협약> 등과 목표 3을 조율하고 전염병 등의 질병에 관한 의약품과 백신 관련 지식 관리를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서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 사회발전 목표 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 4.1. 2030년까지 모든 남녀아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롭고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 제공
- 4.2. 2030년까지 모든 남아·여아가 초등교육 준비를 위한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돌봄,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
- 4.3. 2030년까지 모든 남녀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과정을 포함한 3차교육에 대한 접근의 평등성 보장
-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 등 적절한 기술을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x%까지 확대
- 4.5. 2030년까지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 해소 및 장애인, 원주민 및 취약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전면적 보장
- 4.6. 2030년까지 남녀 공통으로 모든 청소년과 성인 중 x%의 문자해독능력과 기초산술능력 보장
-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확대,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문화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 4.a. 아동, 장애인, 성차별을 배제하고,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모두에게 포용적·효과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교육시설의 구축 및 개선
-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도국에, 특히 최빈국, SIDs, 아프리카국가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ICT, 과학기술 프로그램 등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 고등교육 장학금의 수를 x%까지 확대
- 4.c. 2030년까지 개도국에서 특히, 최빈국 및 SIDs에서 교사 훈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교사양성에 있어 자격을 갖춘 교사를 x%까지 확대

• 목표 4는 교육분야를 특화하고 있는데,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

• 양질의 교육보장을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 대학교육과 직업교육을 포함한 3차교육까지 총망라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의 성평등과 원주민에 대한 고려 등이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안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원양성에 관련된 인력양성을 강조하는 지점도 포함되어 있다.

■ 사회발전 목표 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공유를 확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성건강과 출산권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 목표 5는 성평등과 젠더에 관련된 내용으로 모든 국가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차별과 불이익을 근절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여아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의”와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 “베이징행동강령”의 결과보고서에서 합의한 사항을 연계해서 목표 5가 과거의 결과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또한, 국가가 적절한 인프라, 공공서비스, 그리고 사회보장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가정 내에서도 남녀 간의 평등한 책임공유 등의 성평등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사회발전 목표 11: 도시와 인간정주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인구의 요구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적은 비용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교통체계 제공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과 관리 확대
-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강화
-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총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x%까지 경감
-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지자체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 1인당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축소
- 11.7.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녹색 공간 제공
- 11.a.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확대
-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적응성과 감축, 재해회복력을 확대하고, 향후 통과될 <효고 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를 x%까지 증대
-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

• 목표 11은 도시문제에 천착하여 인류가 거주하는 도시를 거주지 개념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가치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러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가능한 정주 개념으로서 도시화의 범주를 빈민촌 재개발, 대중교통 확대, 도로안전 개선, 자연유산 보호, 물재해 방지, 공기질 개선, 녹색지대 개발, 안전한 건축물 확장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는 반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행기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또한 도시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협력대상국의 현지에서 동원이 가능한 인적자원, 기

자재 등 현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 결론

- SDGs의 사회개발 부분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목표들은 기본적으로 MDGs를 기반으로 확대·재생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국제규범으로서 SDGs가 다루어야 할 이슈영역이 2000년에 비해 다각도로 풍부하고 포괄적으로 조명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다.
- 양적으로 이슈영역이 팽창한데 비해, 질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이행기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목표 16, 17에서 이행기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지만 이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각각의 사회개발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 성평등과 같은 범분야 이슈가 각 목표당 세부목표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 반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녹아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어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경제발전 부문

가)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한 17개의 목표 중 경제개발 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목표이다.

- 목표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목표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목표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 목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이 중 <목표 1>과 <목표 2>를 모든 영역에 공통적인 총괄지표로 볼 때 보다 순수하게 경제개발 분야로 국한할 수 있는 목표는 <목표 8>, <목표 9>, <목표 10>, <목표 12>의 4개 분야와 <목표 17>의 재정, 기술 및 역량강화의 3개 세부목표라고 할 수 있다.

나) 경제발전 목표별 성격 및 특징

- MDGs와 SDGs는 공히 ‘빈곤퇴치’를 세부 목표 1번에 배치하여 이 운동의 대명제가 지구 상에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범세계적 공동노력이란 점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목표 사이에는 15년이란 시차를 반영하듯 빈곤 해소의 절박감과 세부 목표에서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빈곤 인식의 차이: MDGs가 ‘극빈 제거(Eradicate extreme poverty)’란 절대적 목표를 제시하여 지구촌의 최빈곤층 14억명을 직접 구빈대상으로 지목했던데 비해 SDGs는 ‘빈곤 종식(End all forms of poverty)’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절대빈곤층 뿐 아니라 모든 빈곤선 이하의 상대적 빈곤층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빈곤계층을 구빈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빈곤현상을 ‘절대빈곤=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이란 경제적 개념으로 단순화, 계량화했던 MDGs에 비해, SDGs는 빈곤상태를 절대빈곤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보다 만연한 박탈현상으로 이해하는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 빈곤퇴치 방법론의 차이: SDGs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MDGs에 비해 보다 다

양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MDGs가 군사용어를 사용하여 ‘절대빈곤 박멸(Eradicate Extreme Poverty)’을 지상과제로 선포하는 경성 접근법(hard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SDGs는 ‘빈곤의 종식(End Poverty)’이라는 보다 유연한 용어를 사용하는 연성 접근법(soft approach)을 택하고 있다. MDGs가 절대빈곤 그 자체를 직접 타겟으로 설정했던데 비해 SDGs는 절대빈곤을 둘러싼 빈곤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빈곤을 ‘저소득층’이라는 총괄적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굶주림, 식량 부족, 영양 결핍, 농업환경 악화 등으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MDGs가 수술을 통한 환부제거식 치료법이라면, SDGs는 예방의학적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다.

- 빈곤층에 대한 인식의 차이: MDGs가 빈곤층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원조 수혜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SDGs에서는 자력갱생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수단이 원조(aid)가 아닌 지원(support)으로 명명되고 있고, 개개인의 인식 및 사회구조의 변환(transformation)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 정책 목표의 차이: MDGs가 빈곤, 그 중에서도 극빈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데 반해 SDGs는 빈곤타파는 물론 불평등 해소, 성장과 고용, 산업화, 지속가능성 등 보다 광범위한 정책변수를 고려하고 있다.

- 참여 범위의 차이: MDGs가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여국 정부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SDGs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공여국뿐 아니라 수원국 전체가 함께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포용적(inclusive)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개발재원의 차이: MDGs에서는 원조(aid)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SDGs에서는 원조 이외에 외국인 투자, 해외송금 등 다양한 개발재원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경제발전목표 8: 경제성장과 고용

목표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8.1 나라별 상황에 맞추어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화하고, 특히 최빈국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7% 이상으로 지속

8.2 다양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경제적 생산성을 높임. 특히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초점

8.3 생산적 활동, 질 높은 고용 창출, 기업이 정신, 창조와 혁신을 지원하는 발전지향적 정

책을 진흥. 또한 금융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는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을 장려

- 8.4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10개년 계획(10YFP)”에 따라 선진국이 앞장 서서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를 수반하지 않도록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 범세계적인 자원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
-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남녀에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 8.6 고용, 교육, 연수 중이 아닌 청년들의 비율을 2020년까지 현격히 감소
- 8.7 최악의 아동 노동을 금지 및 제거하는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강제노동을 근절하며, 2025년까지 소년병의 징집과 사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종식
- 8.8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
- 8.9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화와 지역 산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2030년까지 수립·집행
- 8.10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 8.a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을 위해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협력 통합구조(EIF)”를 포함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대한 지원을 확대
- 8.b 2020년까지 범세계적인 청년 고용전략을 개발·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를 추진

• <목표 8>에 속한 12개의 세부목표는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성장과, 고용뿐 아니라 제도구축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 있는 일부 조항도 혼재해 있다.

• 경제성장: (8.1조)에서 최빈국의 연간 경제성장 목표를 7%로 제시하고 있다. 연간 7%의 성장률은 대략 매 10년마다 GNI(국민총소득)의 크기가 2배로 증가 할 수 있는 고성장률이다. 일부에서는 연간 7% 성장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지만 LIDCs(Low Income Developing Countries)의 연간 성장률이 1990년대 3.6%에서 2000년-2013년 사이에 6.5%로 증가하였던 실적(IMF, 2014)을 감안하면 반드시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8.1조의 첫 문장은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화(Sustain per capita economic growth)”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인당 소득 성장의 지속화(Sustain growth in income per capita)”로 수정되어야 정확한 표현이다. (8.2조)와 (8.3조)는 후진국 경제성장의 필요 요소이자 결과인 산업다각화, 혁신, 기업가 정신 등 다양한 개념들을 열거하고 있는 선언적 조항으로 판단된다.

• 고용증진: (8.5조-8.8조) 그리고 (8.b조)는 고용증진 및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적 조항들이다. (8.5조)는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고, (8.6조)는 일본에서 만든 신조어를 원용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8.b조)는 200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주도하여 체결된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의 추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 (8.4조)와 (8.9조)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규제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이란 개념은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주창된 개념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3년 Marrakech에서 “10개년 계획(10YFP: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구축을 위한 다자간 프로세스가 시작되었고 2012년 Rio+20회의에서 채택되었다. (8.4조)는 차라리 <목표 12>로 통합시키는 편이 보다 적절한 편제로 판단된다.

- 제도: (8.10조)는 개도국의 국내 금융기관 역량강화를 제시하고 있고, (8.a조)는 최빈국의 무역관련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WTO와 OECD가 주도하여 시작한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협력 통합구조(EIF: 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 경제발전목표 9: 인프라 스트럭처와 산업환경

<p>목표 9. 건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p> <p>9.1 경제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값싸고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질 높고 튼튼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적·국가간 인프라를 구축</p> <p>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공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최빈국에서 공업의 비중을 (현재보다) 2배로 증가</p> <p>9.3 소규모 기업, 특히 개발도상국의 소기업들이 합리적인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시장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p> <p>9.4 2030년까지 인프라와 오래된 공업설비를 개선하여 자원효율성을 증진.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및 공업과정을 보다 더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의 능력에 따라 이를 실행에 옮김</p> <p>9.5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모든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공업 부문의 기술역량을 향상.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인구 백만명 당 연구개발 인력의 숫자를 x% 증가시키고, 민간 연구개발 지출을 증가</p>
--

-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 개도국, 도서국에 대한 금융,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력있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개발을 촉진
- 9.b 국내 기술개발과 연구·혁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그 중에서도 특히 산업을 다각화하고 제품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지원
- 9.c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을 현저히 증가시킴. 아울러 2030년까지 최빈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렴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목표 9>에 속한 8개의 조항은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산업화, 기술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제시되지 않고, 최빈국의 경제가 2030년까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는 규범적, 선언적인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어 있다.

• 인프라 구축: (9.1조)와 (9.a조), (9.c조)는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목표에서는 인프라를 도로, 교통, 항만, 철도 등 물리적 인프라만을 지칭하지 않고, 금융, 기술, 통신 등 광의의 인프라로 해석하고 있다. (9.1조)에서는 지역적, 국경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으며, (9.a조)는 아프리카 나라,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 등에서 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c조)는 ICT 및 인터넷 접근도 향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산업화: (9.2조)에서 2030년까지 최빈국 경제에서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공업의 비중이 현재보다 2배로 증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9.4조)에서는 기존 산업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보다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인 시설로 개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중소기업 금융 지원: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금융 접근도 및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기술 및 연구개발: (9.5조)와 (9.b조)는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과 연구개발인력 증원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시안(x %)을 제시하고 있다.

■ 경제발전목표 10: 불평등

- 목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 10.1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이 국가 평균을 능가하고, 이를 유지
 -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혹은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

- 10.3 차별적 법,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적절한 입법, 정책, 행동을 조장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경감
- 10.4 재정, 임금, 사회보장 정책 등 점진적으로 보다 공평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채택
- 10.5 전세계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을 규제하고 감찰하는 방안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
- 10.6 국제 경제·금융기관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고, 책임성 있고, 정당성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목소리를 높임
-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시행을 통해 질서 있고, 안전하고, 정기적이고, 책임성 있는 이주와 이동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10.a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과 부합되도록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하고도 차별적인(S&D)” 대우원칙을 시행
- 10.b 최빈국, 아프리카국, 도서국, 내륙국 등 수요가 가장 큰 나라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금융 흐름을 해당 국가의 국가계획과 정책에 맞추어 지원할 것을 권장
- 10.c 2030년까지 이주노동자의 송금 거래비용을 3% 이하로 낮추고, 해외송금지구(remittance corridors)에서 5%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 <목표 10>은 Post-2015 및 SDGs 수립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새로운 주제이다. 즉, MDGs가 절대빈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최빈국을 겨냥한 정책목표였다면, SDGs의 <목표 10>은 최빈국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지구촌 전체의 경제적 상황 및 운영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야심찬 주제이다. <목표 10>에서는 글로벌 평등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가 제시되고 있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 제시: (10.1조)와 (10.c조)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와 목표 수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10.1조)에서는 소위 Palmer 방식으로 불리는 최빈곤층 40%의 소득을 정책 관리대상 계층으로 지목하여 이 계층의 소득증진에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불평등 격차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던 5분위율이나 10분위를 관리방식을 하위 40%까지 확장하여 만성적 불평등 구조를 사회 전반적 시각에서 관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c조)는 21세기 들어 공적원조를 능가하는 해외송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노동력 송출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송금의 거래비용을 구체적으로 3% 이내로 경감해주고, 미국 서남부의 멕시코인 근로자처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해외송금지구(remittance corridors)에서 송금비용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기 위한 제안이다.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및 제도: (10.2조-10.5조) 및 (10.7조)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포용정책 및 법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10.5조)에서 국제금

용시장에 대한 규제, (10.7조)에서 안전한 이주의 보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강화 및 특별 대우: (10.6조)에서는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제안 하고 있고, (10.a조)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빈국을 위한 특별한 대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개발재원의 확대: 최빈국 등 취약국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투자(FDI) 등 개발재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경제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

- 12.1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10YFP)”을 이행.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선진수범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단계와 역량을 고려
- 12.2 2030년까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
- 12.3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반으로 줄이고, 수확 단계를 포함한 생산 및 공급사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을 감축
- 12.4 2030년까지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을 국제규범에 따라 잔존 연한까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대기, 물, 토지에 대한 방출을 확실히 감축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
- 12.6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지속가능 관행을 채택하고, 지속성에 관한 정보를 보고
- 12.7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과 우선순위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공공조달 방식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
- 12.8 세계 도처의 모든 인류가 203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과 생활방식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12.a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
- 12.b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유 문화와 지역산품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관광을 위해 지속가능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추진
- 12.c 낭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등 나라별 사정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 이 방안에는 조세구조 개혁, 유해한 보조금 지급 축소, 개도국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조건 반영, 빈곤층과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등이 포함

• <목표 12>는 경제발전에 해당되기 보다는 환경보호 주제에 더 어울리는 실천과제로도 구성되어 있다. 여타 경제개발 주제와 달리 <목표 12>는 지속가능 환경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함께 참여해야 하는 비교적 잘 정합된 주장들을 담고 있다.

- 지속가능 계획 수립: (12.1조)는 이미 (8.4조)에서 언급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12.2조)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사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 폐기물 배출 규제 및 관리: (12.3조-12.5조)는 폐기물 배출 억제 및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3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반으로 감축할 것을 제시하고 있고, (12.4조)는 모든 폐기물, 특히 화학 폐기물의 배출 및 관리를 국제규범에 따라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2.5조)는 폐기물 배출의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 경제 주체별 행동강령: (12.6조-8조)는 기업, 정부와 소비자들의 생산, 소비, 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12.a조)에서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2.b조)에서는 지속관광의 영향 평가를 위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12.c조)에서는 각국의 화석연료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강화 및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 경제발전목표 17: 이행수단

<p>•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p><u>재원(Finance)</u></p> <p>17.1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세 및 여타 수입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량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국내재원동원을 강화</p> <p>17.2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약속을 이행. 즉, 국민총생산의 0.7%를 개발도상국을 위해 지원하고, 이 중 0.15-0.20%는 최빈국에게 지원</p> <p>17.3 개발도상국을 위해 여러가지 다양한 재원을 추가적으로 동원</p> <p>17.4 개발도상국들이 적절하게 국제 조달, 채무 탕감, 채무 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간에 정책을 공조하고,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p> <p>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진흥방안을 채택하고 시행</p> <p><u>기술(Technology)</u></p>

- 17.6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강화. 또한 유엔 차원에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혹은 동의될 새로운 범세계적인 이행제도(창설)를 통해 상호 동의한 조건에 따라 지식공유를 강화
- 17.7 상호 합의에 따라 우호적인 조건(양허적, 특혜적 조건 포함) 하에 개발도상국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 이전, 배분, 확산을 추진
-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제도를 확대 운영. 또한 활성화기술(enabling technology),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

역량개발(Capacity-building)

- 17.9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원하여, 효과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역량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북남, 남남, 삼각협력을 포함하는 국제적 지원을 강화

무역(Trade)

- 17.10 도하개발의제(DDA)의 협상 종결을 포함하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보편적, 규칙에 기반을 둔, 공개적,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립
- 17.11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진. 특히 2020년까지 최빈국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배로 늘림
- 17.12 모든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WTO 결정과 부합되는 지속적인 무관세-무할당(Duty-free and Quota-free) 시장접근 혜택을 적시 추진. 여기에는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간명하고, 시장접근이 용이하게 마련될 것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

• <목표 17>의 세부 항목 중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개발(capacity - building) 및 무역(trade)은 경제개발 주제의 중요한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 재원: 과거와 달리 <목표 17>의 (17.1조)는 해외원조가 아닌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세금 등 국내 재원을 조달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7.2조)에서는 선진국들이 1970년대 <Pearson 보고서>에서 제기된 이래 국제사회의 미완의 약속인 GNI 대비 0.7%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고, 2011년 제4차 유엔 최빈국회의 <Istanbul 행동계획 (IPoA)>에서 제시된 최빈국을 위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거듭 명시하고 있다. (17.3조)는 ODA 이외의 다양한 재원을 동원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7.4조)에서는 외채 관리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17.5조)는 최빈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술: 이 장에서는 (17.6조)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나라간 협력과 지식공유를 제안하고, (17.7조)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환경관련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권장하고 있다. (17.8조)에서는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및 역량개발, 특히 ICT의 활용도 제고를 권장

하고 있다.

- 역량개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을 위한 국가간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 무역: 이 장에서는 무역을 통한 발전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17.10조)에서는 WTO 체제와 도하개발아젠다(DDA)의 타결에 바탕을 둔 국제무역질서의 진흥을 언급하고 있다. (17.11조)는 2020년까지 세계 수출에서 최빈국 수출의 비중을 2배 증가시키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17.12조)는 최빈국들의 선진국 시장 접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세와 수량규제가 없는(Duty-Free and Quota-Free) 시장접근성 제공과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특별적 원산지규정 방식을 왜곡 활용하지 말고, 간명하게 운용하여 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경제개발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사무총장의 종합보고서는 공히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지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 하에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개발재원회의와 9월 유엔 특별정상회담에서 논의될 post-2015의 수많은 과제를 나열하고 있는 일종의 '의안 비망록(aide memoire for agenda)'이다. 따라서 아직은 잘 다듬어진 보고서가 아닌, 최종 목표 설정을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초안 보고서라는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69개 세부 목표와 종합보고서의 161개의 조항들은 현실적 근거가 약한 주장들이 포함되었거나, 상호 중복된 항목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경제개발 분야로 국한해 보아도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년간의 회의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망라하여 일관성 없는 단어들을 모아 놓은 비논리적인 문장구조 (예: 목표 8-3)이거나, 다른 목표로 합류하여 편입될 것을 혼재시킨 경우(예: 목표 8-4), 세속의 유행어(NEET족)를 꽃아 놓은 모양새(예: 목표 8-6)가 쉽게 발견된다. 대체로 17개 개별 목표의 제목들이 회의석상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단어(특히 형용사)들이 난무하는 너무 긴 문장이다(예: 목표 8, 9, 15, 16). 일부 문장들은 부정확한 용어들이 사용(예: 8.1)되거나, 수식어들이 길어지면서 해당 목표의 핵심단어들이 부각되지 못하고(예: 12.b), 목적어가 도치되어 정책수단과 결과가 뒤바뀌어 있는(예: 12.c) 용장한 문장구조가 되어 있기에 대폭적인 윤문과 축약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 이번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가장 각광받는 주제인 불평등의 문제도 하위계층 40%의 소득을 관리대상으로 하자는 Palmer 지수를 내세운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조항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범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목표 10>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86년의 유엔발전권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21세기 초에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선언적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목표 10>의 이행조항인 <10.a-c조항>이 구체적인 불평등 해소방안과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있기에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본문으로 격상시켜 살려 두어야 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 두 보고서 모두 현 시점에서 표출된 국제사회의 희망사항이 열거(Wish List)되어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치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보고서이다. 따라서 2015년에 개최될 일련의 회의를 통해 매우 압축된 형태로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현재와 같은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책목표가 분산되어 국제사회의 노력이 방향성을 잃게 되는 ‘다양화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8가지의 최소 목표만 제시하고 군사용어처럼 간명한 단어를 사용한 새천년개발목표가 인지제고 및 운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현재의 두 보고서는 수사적 문장에 치중하여 슬로건에 가까운 문약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에 목표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낭만적, 비현실적 목표는 자칫 “모든 사람들을 뒤쳐지게(Leave all behind)”할 우려가 있고, UN의 창립이념에서 제시된 ‘존엄성(Dignity)’이란 숭고한 단어를 너무 쉽게 원용하여 21세기 초 빈곤퇴치에 활용함으로써, 자칫 “딱딱한 빵 조각 하나”로 존엄성을 회복시킨 것처럼 국제사회에 만연하는 위선을 합리화시켜줄 위험성이 있다. 이럴 경우 UN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존엄(Dignity for All)”이 자칫 “(유엔의) 존엄을 위해 존재하는 인류(All for Dignity)”처럼 목적과 수단이 도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러한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두 보고서는 MDGs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온 인류의 염원과 희망이 담겨 있는 보고서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그 가치를 폄훼할 수 없다. 비록 2014년에 제시된 모든 쇼핑 목록(shopping list)이 2015년의 논의과정을 통해 불과 몇 개의 소박한 목표로 정제(crystallize)되더라도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어 21세기 전반에 인류 최초로 “빈곤을 타파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From Poverty To Dignity)” 위한 시대적 소명과 범세계적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두 보고서는 21세기 초 70억 인류의 염원, 즉 지구촌의 숭고한 가치를 포용하고 있는 위대한 인간보고서(Great Human Reports)이다.

3) 환경부문

가)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 8대 개별 목표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분절적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 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적실하게 다루지 못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 분야에서 다층적으로 세부적인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MDGs 목표 중 환경 영역은 7대 목표인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하나였는데, 새로운 SDGs 에서 환경부문 목표는 5가지로 확대되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목표 6(물과 위생), 목표 7(에너지), 목표 13(기후변화), 목표 14(해양), 목표 15(생태계보호와 사막화방지)로서 그 세부내용 및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이 채택한 17개의 목표에서 환경 관련 목표는 아래와 같다.

-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 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

나) 환경분야 목표별 성격과 특성

■ 환경부문 목표6: 물과 위생

-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 6.1 2030년까지 안전하고 이용 가능한 식수에 대한 모두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을 확보
- 6.2 2030년까지 위생 환경/설비에 대한 모두의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노상 배변을 종식

- 6.3 2030년까지 공해 저감, 위험 화학약품 및 유해물질의 투기 근절 및 발생 최소화, 미처리 폐수의 비율 절반 이하로 감소, 그리고 재활용 및 재사용률을 증가시켜 수질을 개선(x%)
- 6.4 2030년까지 모든 분야에서 용수 효율을 지속가능하게 증가시키고,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담수의 지속가능한 배수와 공급을 확보하고,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소
- 6.5 2030년까지 모든 단계(초국경적 적절한 협력 등을 포함)에서 통합된 물자원 관리를 시행
- 6.6 2020년까지 물 관련 생태계(산맥, 산림, 습지, 강, 대수층, 호수 등)를 보호하고 보전
- 6.a 2030년까지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우수 저장, 담수화, 용수 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부문에서 국제 협력 및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증진
- 6.b 물과 위생 관리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 MDGs(새천년개발목표)는 8대 개별 목표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분절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문제 속에서 환경 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적실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MDGs 목표 중 환경 영역은 7대 목표인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였으며, 이의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은 4가지로 구성되었다.

- “12.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국가정책 및 계획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의 손실을 복원한다”.
- “13.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하고 2010년까지 감소율을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14.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인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반으로 줄인다”. “15.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시킨다”.

• SDGs 목표6은 위와 같은 MDGs 7대 환경 목표의 4가지 세부목표 중 14번째 목표(안전한 식수 및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인구를 2015년까지 50%로 줄임)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적이고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MDGs 7. 14 목표(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기초적 위생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비율 반감)는 일단 달성되었다고 보는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전히 개발도상국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base 자료 등). 구체적으로 56개 국가는 2015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며, 심지어 20개 국가는 이러한 진전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주 약 3만명의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식수와 위생으로 인하여 사망하며, 이 중 90%정도가 5세 이하의 아동으로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면 서아시아 지역과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으나, 다른 지역은 매우 큰 진전을 이루어 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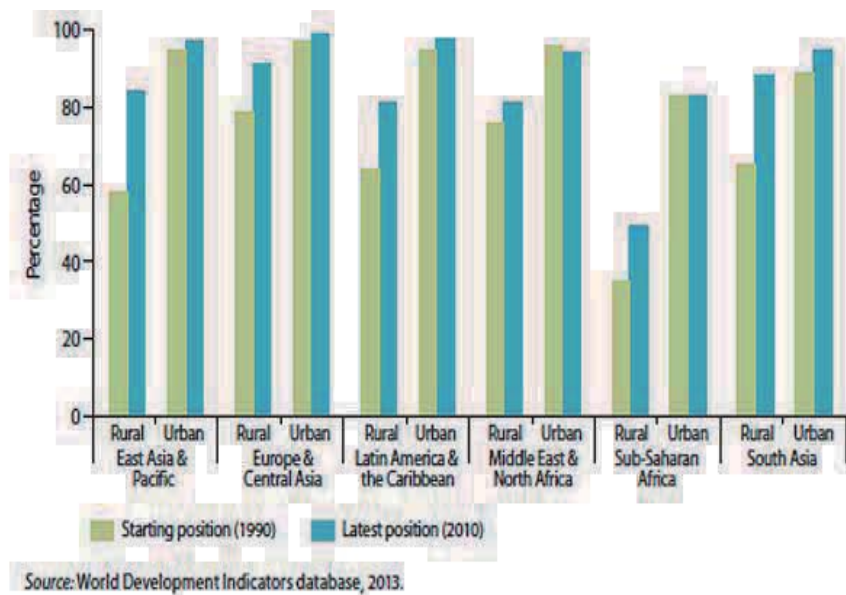


그림 1. 안전한 물에 접근하는 비율 (1999-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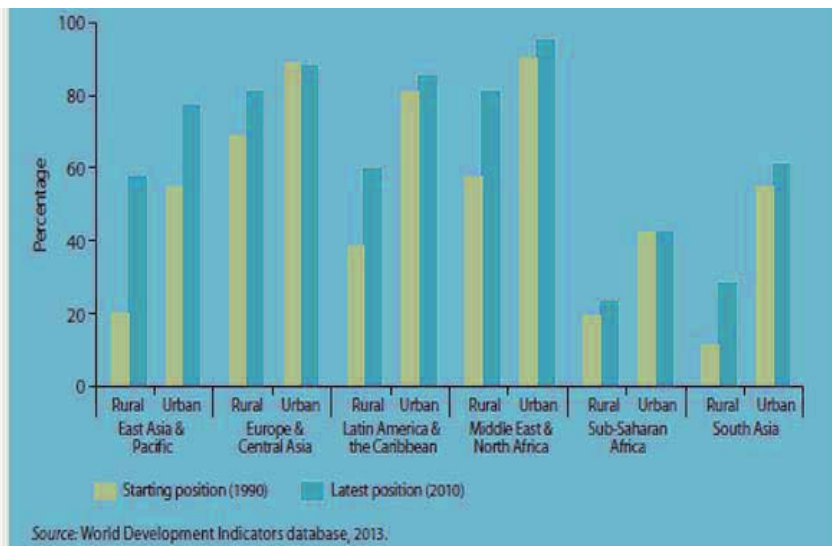


그림 2. 위생시설에 접근하는 비율 (1999-2000)

• 2015년까지 불안전 식수공급 인구(11억명)와 위생 서비스 미공급 인구(24억명)를 50% 감축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물·위생·인간정주 분야 WSSD 합의사항 이행촉진을 위한 정책결의문(Policy Decision)을 채택해 현재까지 실행해왔다.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국제적 재원

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 정부, UN, 국제금융기구, Major Group 등의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SDGs 목표6 달성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구축/확충해나가야 할 방안이다.

- 적절한 위생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개인의 보건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즉, 위생습관, 나쁜 위생시설, 오염된 식수원과 질병 간의 관계에 대해 지역사회와 개인이 잘 알고 있을 때, 식수와 위생시설 제공을 통해 최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한편, 위와 같은 물(식수)과 위생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기후변화 문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SDGs 목표13 과 통합적 연계 조치들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 환경부분 목표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현대식 에너지 서비스 전면 제공 보장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실질적인 증대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 비율의 2배 확대

7.a 2030년까지 선진적이고 보다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 증대와 에너지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

7.b 2030년까지 모든 개발도상국에 특히, 최빈국과 SIDs에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술을 업그레이드

- MDGs(새천년개발목표)에서 에너지 분야 관련 내용은 다루지지 못했다. 다만 4가지 세부 목표 중 15번째 목표(“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빈민가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향상 시킨다”)를 통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 2010년부터 2050년 까지 에너지 분야의 추세 측면에서, 1차 에너지 사용이 8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연료 믹스는 상당히 안정적(화석 연료 85%, 재생가능에너지 10%, 핵 에너지 10%)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집약도 항상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SDGs 목표7 (모든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을 통해서는 MDGs 시기에의 노력 차원의 연장선 상에서 향후 2030년까지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더욱 확보 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을 2배 향상시키고 에너지 믹스(재생가능에너지, 화석연료, 핵에너지 등) 상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배 증가시키는 등의 목표들이 계량적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 SDGs 목표7의 내용에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믹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이 중심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중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 경제성장의 동력제공, 사회 형평성 제고 등의 역할을 통해서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는다. 세계 각국에서는 에너지 R&D 중 상당부분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신·재생에너지 국제 협회 및 회의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분 목표13: 기후변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가장 최상위의 국제적, 정부간 포럼임을 인정

-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 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역량을 강화
- 13.2 국가 정책, 전략,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방안들을 통합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증진
- 13.a 기후변화 완화 조치 및 이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US달러 상당의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기로 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 총회에서의 약속을 준행하고, 가능한 신속히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완전하게 운용
- 13.b 최빈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를 강화 (여성, 아동, 소외된 공동체 등 포함)

- MDGs(새천년개발목표) 목표 7(환경 지속가능성 확보)의 세부목표 4가지 중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기후변화 이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차원에서 그 방안들을 논의해왔는데, 위와 같이 SDGs 목표13및 5가지 세부목표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협의 내용 및 실천방안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다.

- 2013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0억톤(ton) 으로 발표되었다(‘글로벌 탄소 프로젝트’).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28%로 미국 14%와 유럽연합 28개 회원국의 10%를 합친 것보다 컸으며, 중국의 배출량은 전년도보다 4.2% 증가해 미국의 증가율 2.9%를 넘어섰으며, 반면에 유럽연합은 1.8%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토의정서의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65%가 늘어난 것으로, 결국 국제 사회의 배출량 감축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2013년 우리나라는 61억 6000만 톤(ton) 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다음의 7위를 기록했다.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이었다. 1

인당 연간 배출량은 13톤(ton) 이다. 이는 유럽연합 6.8톤(ton), 일본 9.8톤(ton) 보다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위원회(IPCC)가 작성한 각종 배출량 증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배출량이 많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3.2~5.4도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출 추세라면 30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 여유 용량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전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들의 실행의 필요성이 절정에 달해 있으며, 유엔기후변화협약과 SDGs 목표 13 과의 일치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 마련 문제는 2014년 11월에 한국과 미국·일본 등 21개국이 94억달러의 자금을 공여하기로 합의하여, 2015년부터 녹색기후기금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재원 조성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재원 공여 지원으로 촉구하면서, 민간 부문에서의 지원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분 목표14: 해양 생태계

목표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14.1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특히, 해양쓰레기 및 부영양화 등의 육상 활동 등으로 야기되는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하게 줄임
-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그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악영향을 막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환경 조성
- 14.3 모든 단계에서의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결
- 14.4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량을 규제하고, 과잉 어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그리고 파괴적인 어획을 종식시키고, 실행 가능한 최단 기간 내에 적어도 생물학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최대의 지속가능한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산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 기반 관리계획을 시행
- 14.5 2020년까지 적어도 해안 및 해양 영역의 10%를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가장 유용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할 수 있도록 보전
- 14.6 2020년까지 과잉생산 및 어획에 일조하는 일단의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들을 없애고, 새로운 보조금들을 도입하는 것을 자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이 WTO 어업 보조금 협상의 필수적인 부문이 되어야 함을 인정)

14.7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으로부터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에게 돌아가는 경제 이익을 증진

14.a 해양 건강성을 개선하고 개발도상국들(특히 군소도서국 및 최빈국)의 해양 생물다양성 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양기술(공학) 이전에 관한 정부간해양학위원회(정부간해양학위원회(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과학 지식을 증진하고, 연구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양기술(공학)을 이전

14.b 소규모 영세어업의 해양 자원 및 시장으로의 접근성 확대

14.c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국제법의 완전한 시행을 보장하고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지역적, 국제적 제도를 이행

• 새천년개발목표에서는 상위 목표와 세부 목표에서 해양 자원 및 오염 문제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현재 전 세계의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의 약 80%는 육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해양오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바다 한 가운데에 버려지는 각종 폐기물, 폐유 등)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 지구적인 어류량의 감소추세(1996년 해양 어류 생산량 8,630만톤 최고치 기록 이 후, 생산량 감소 및 상당한 변화 지속)도 연안국의 노력과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SDGs 목표 14로 포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들의 효과적인 국제적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해양자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통합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권고/지원할 수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

• 한편, 현재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양환경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 연안국이 우선 개별적으로 국제법규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공해예방·감소·통제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그 다음에 관련 국제기구나 관계 당사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통일적 국제법규 및 기준을 확립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노력은 매우 저조하며, 해양오염과 관련한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육상으로부터 기인되는 오염의 경우, 반폐쇄해나 폐쇄해의 해양환경은 연안국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보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SDGs 14와 관련 내용들은 동북아 지역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역적 협력과 노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부분 목표15: 육상생태계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다양성 감소를 억제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 15.1 2020년까지 육상과 내륙의 담수 생태계와 그 체계, 특히 국제협약 의무사항 연장선상 의 산림, 습지, 산맥, 육지 등의 보전, 복원,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
- 15.2 2020년까지 모든 종류의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증진하며, 사막화를 방지하 고,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산림화와 재산림화를 전지구적으로 증진(x%).
- 15.3 202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척박해진 토지와 토양(사막화, 가뭄 및 홍수에 영향을 받는 토지 등)을 복원하며, 토지 황폐화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
-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림 생태계 보전(생물다양성 등)을 확보
- 15.5 자연서식지의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2020년까지 절멸 위기 종의 멸종을 보호하고 예방
- 15.6 유전(genetic)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혜택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를 이루고, 유전자원 으로의 적절한 접근성을 향상
- 15.7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거래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야생 상품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모두 다룸
- 15.8 2020년까지 육상과 물 생태계의 외래종의 침습을 막고 그 영향을 크게 감소시키며, 우선순위 종을 관리하거나 근절
-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 및 지방 계획, 발전 과정, 빈곤 감소 전략, 계정에 포함
-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 재정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중대하게 확충
- 15.b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재정 지원을 위해 모든 출처 자원들을 중대하게 동원하고, 산림 보전과 재산림화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 15.c 지속가능한 생계 모색을 위한 지역 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등 보호종의 포획과 거래 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 MDGs(새천년개발목표)에는 산림, 사막화, 토지 황폐화 부문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했으 며, 생물다양성 보호의 경우 세부목표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목표 시한이 지났음에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MDGs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점차 증가(2010년 15만 개의 보호구역은 전세계 육지의 12.7%, 연안 해역의(12해리) 7.2%

를 차지)하였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 목표 15는 기존의 사막화방지 관련 국제적 협약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노력과 협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고화/통합시키는데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토지황폐화를 중지시키는 ‘zero land degradation’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MDG 7.13(생물다양성 감소율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 감축)에 포함되었던 생물다양성 보호 목표 달성은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 생물다양성 목표의 주류화 부족, 측정의 한계, 달성을 위한 의지 부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범(multi-lateral)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이외에 빈곤, 보건, 질병 등 다른 목표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났다.

- SDGs에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상위 목표로 다루면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및 SDGs의 다른 목표들과의 조화를 모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육상 생태계 분야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복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 사막화 방지, 토지 침식, 조림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분야와 통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 보호뿐만 아니라 육상 및 해양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빈곤 해결, 식량 안보, 물 접근성 등 다른 분야 상위 및 세부 목표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결론

-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환경분야에 해당되는 다섯 가지 전지구적 목표들(물과 위생,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보호와 사막화 방지)들의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적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Post-2015의 국제 환경레짐의 핵심적 규약 및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다뤄지지 못한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및 오염 문제, 산림, 사막화, 토지 황폐화 등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노력의 새로운 디딤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17(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전략적 이행의 실현 가능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개발(Capacity-building) 차원들이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행수단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기제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전략 목표 해제

가) 서론

2000년 합의된 MDGs에서는 목표 8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명시하면서 이행전략을 목표화하는 반면, SDGs는 목표 16과 17에 이행전략에 해당하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MDGs에 비해 발전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 목표 16은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정의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justice)에 대한 목표를, 목표 17은 보다 자세하게 구체적인 이행기제들을 적시하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도 다양하게 주요 목표들을 거론할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고민이 반영된 글로벌 이행기제의 제도화라 할 수 있다.

최소한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책무성(accountability)이 담보되지 않은 이행기제의 부재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목표달성의 자발적 강조는 결국 SDGs를 추진하는 과정이 정치적인 수사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목표 16과 17을 자세히 분석하고 앞으로 2015년 1월부터 시작될 정부간 협상 과정에서 이 두 목표가 독자적인 목표로 선택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독자적인 목표로 선정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행메커니즘이 지구적·지역적·국내적 수준에서 제도화되고 통합적으로 조율될 수 있는 정치적인 합의가 도출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나) 이행전략 목표별 성격과 특징

■ 이행전략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책무성 있는 제도 기반 확충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확대, 정의에 대한 접근성 확대,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16.1. 전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이와 관련된 사망률의 대폭 축소

16.2. 아동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근절

- 16.3.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법치 촉진 및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 접근성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적인 자금 및 무기유입 감축, 은닉한 재산의 환수, 모든 형태의 조직 범죄 근절
-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수수의 실질적 감소
-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기관 개발
- 16.7. 모든 차원에서 여론에 응답성이 제고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의적인 의사결정 보장
- 16.8.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참여 확대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 보장
-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정보접근성 보장 및 기본적 자유 보호
- 16.a. 국제협력 등을 통해서 폭력예방과 테러리즘과 범죄 근절과 관련된 국내제도 강화
-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률과 정책 추진 및 법제화 강화

• 목표 16은 목표 1부터 15까지를 달성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협력대상국 및 선진공여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적 차원의 포용성, 책무성, 신뢰성, 그리고 효과성을 요구하는 일종의 good governance의 핵심적인 요소를 SDGs에 맞게 재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과 사망률, 아동학대·인신매매·고문 근절, 법치(rule of law)와 정의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justice), 불법자금 근절, 테러리즘 방지, 국제사회에 개도국 참여 확대, 책무성 강조, 부패 방지 및 투명성 강조 등으로 광범위한 국내적,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MDGs 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적 개혁에 대한 목표가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데 반해, 이러한 다양한 목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각각의 세부 목표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행기제에 대한 제안을 SDGs에 포함하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부 목표 16.3인 법치의 경우, 브라질을 위시한 많은 개도국 대표들이 법치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에 반대하였는데 반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선진국 대표들은 지구적 차원의 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정확하게 법치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기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느슨한 형태의 법치에 대한 목표를 국내와 국제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정도에서 봉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국제사회와 SDGs에서 이해하는 책무성은 아직까지 이른바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도입에 국한하여 목표화하고 있다는 한계가 노정되어 있다. 책무성(accountability)은 투명성만을 의미하는 이행기제가 아니라 투명성에 기반을 둔 집

행강제성(enforcement)이 수반되어야 한다. 원조기관이나 국제기구가 원조집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협력대상국 정부의 부패나 원조수행 자세에 문제가 있어 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책임추궁을 하고 필요 시 제재를 가하는 집행강제 제도가 동반되어야 실질적으로 책무성이란 이행메커니즘이 효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차후 2015년 9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책무성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화를 집행강제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행전략 목표 17: 이행기제와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17.1. 개도국의 세금과 공공수익 징수에 관한 역량발전을 위해 국제적 지원 확대와 국내재원 동원 역량 강화
- 17.2.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ODA/GNI 비율 0.7%를 달성하는 노력을 비롯하여 ODA 강화를 완수해야하며, 이 중 0.15-0.2%는 최빈국에 제공
- 17.3.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 동원
-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 등을 위한 공조정책을 통해 개도국의 장기부채지속성을 지원하고, 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고채무국의 외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
- 17.5. 최빈국에 투자촉진 체제 도입 및 시행

기술

- 17.6. 유엔 차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조정메커니즘과 합의 시 국제기술증진 메커니즘을 통하여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남북, 남남, 삼각협력,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와 상호 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확대
- 17.7.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조건을 포함하여 개도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이전·보급·확산 노력 강화
-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가동하고 ICT 등의 적정기술 사용의 확산

역량강화

- 17.9. 개도국이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통해 모든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역량강화 실행에 대한 국제적 지원 확대

무역

- 17.10.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에서 나온 결론 등을 포함하여 WTO 체제 하의 범세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공개적·비차별적·평등한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
- 17.11.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 중 최빈국의 비중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량 확대
- 17.12. WTO 결정의 연장선 상에서 최빈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특혜원산지 규정 적용을 투명하고 단순화하여 시장진출을 촉진하도록 도모하는 것을 보장하는 등 최빈국이 지속적으로 무관세 및 무할당 시장진출 이행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시의 적절하게 실현

체계적 쟁점

-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 향상
-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증대
- 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 개별 국가의 정책과 리더십을 존중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 17.16. 모든 국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자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
- 17.17.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십 전략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확장 및 증진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및 SIDs를 포함한 개도국에서 소득, 젠더, 연령, 민족, 이민 신분, 장애, 지리적 위치와 기타 국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종합한 수준 높은 시의적절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
- 17.19.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량(GDP)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 지원

• 2000년 MDGs와 유사한 목표 조항으로 SDGs의 목표 17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 이행기제 중 가장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부분은 개발재원으로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에 개도국 국내재원, ODA를 포함한 국제재원, 그리고 혁신적 재원(innovative sources)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SDGs의 목표 17도 비슷하게 개도국의 세금 징수제도 개혁, ODA의 0.7% 기준 고수, 채무탕감 및 수출역량 강조 등으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이행기제 관련 내용으로 세부 목표가 다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재분류되어 있는데, 기

술·역량강화·무역·시스템쟁점·다양한 이해당사자 중심 파트너십·M&E·책임성 등이 이러한 분류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카테고리 모두가 중요한 것을 사실이나, 왜 이러한 분류기준이 중요하고 목표 17의 주요 세부목표로 설정된 이유 내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 없이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 SDGs 개발파트너십의 특징은 이른바 복수의 다양한 이해주체들 간의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 원조 당사국뿐만 아니라, 의회,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사기업, 재단, 연구소 등이 포함되는 대단히 확장된 형태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트너들 간의 명확한 책임 소재가 정해지고 공유되지 않으면 파트너십 내부에서 갈등과 책임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곧 책임성의 문제로 연결된다. 복수의 파트너가 참여할수록 보다 정교하고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책임성 기제가 필요하다.

- 최빈국의 수출역량 강화와 수출을 실질적으로 진작할 수 있는 선진국의 배려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선진국의 국내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으로 연결된다. 국내 주요 정부기관 간의 개도국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제도화하는 것이 주요 이행기제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공여국 내부에 이러한 정책일관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부처 간의 반발 때문에 쉽게 제도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 결론

- 이행기제와 관련된 목표 16, 17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정책화하고 제도화하는 유엔 산하 기관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Jeffrey Sachs가 유엔과 함께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의 활동이 종합적인 이행기제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2012년 8월 민간독립자문기구로 창설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주제별로 자문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미 2013년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동강령(An Action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10대 목표와 30대 세부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 목표 17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세부 목표가 개발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G77과 중국을 중심으로 개도국 국가들이 개발재원 부분을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유엔이 ODA/GNI 대비 0.7%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방하고 있다.

-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기간에 가장 글로벌 수준의 집합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유엔개발협력포럼(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UNDCF)과 Post-2015 개발의제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기타 협의체와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도모할 것인가에 있다. 현재 복수의 협의 채널이 Post-2015 개발의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유엔 중심으로 조율되고 있지만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협의 플랫폼이 있다.

첫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Busan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으로 이는 2011년 부산에서 합의된 결과물 중 하나이자 2012년부터 개발한 부산모니터링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이행기제를 추진하고 있다. GPEDC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주제 중 남남/삼각협력, 지식공유, 책무성·투명성, 민관협력 등은 이미 UNDCF가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것과 중첩되어 분절화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둘째, 2011년 8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결성된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으로 2014년 현재 66개국이 참여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OGP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개발파트너십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체제 장외에서 특정국가군과 CSOs가 Post-2015 개발체제에 대한 action plan을 주창하고 스스로 집행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UNDCF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UNDCF와 GPEDC, 그리고 OGP 간의 관계설정 및 구조적 조정이 동반되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Post-2015 개발시대를 주도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GPEDC는 UNDCF에게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이행기제들의 제도화라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책무성 기제, 개발재원, 남남/삼각협력 등의 구체적인 논의가 이미 GPEDC에서 합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SDGs의 목표 16과 17의 주요 담당 기관을 GPEDC로 특화시키면 정합성이 뛰어난 글로벌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또한 OGP를 유엔 체제 안으로 명확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고 주요 공여국과 CSO의 연합체라는 성격을 살려 UNDCF가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다자협의체를 이용한 생산적인 거버넌스의 이중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과제와 전망

2015년 1월부터 9월 유엔 총회와 정상회의 전까지 유엔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 지속발전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엔은 협상을 위해 아일랜드와 케냐를 의장국으로 선출하였고 8회에 걸쳐 총 36일간의 협상일정을 확정하였다. 채택할 최종문서는 비전과 의의를 담은 선언, 그리고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이행기제에 해당하는 모니터링과 이행 검토 프레임워크 및 이행수단과 지속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의장은 5월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5월 말 구체적인 문안협상을 위한 초안을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 정부간 협상 일정과 의제

	일정	의제
1차	1월 19-21 (3일간)	현재까지의 논의 및 현황 점검 (Stocktaking)
2차	2월 17-20 (4일간)	선언 (Declaration)
3차	3월 23-27 (5일간)	지속발전목표 및 세부목표 (targets)
4차	4월 20-24 (5일간)	모니터링과 이행 검토 프레임워크 (Framework for monitoring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5차	5월 18-22 (5일간)	이행수단과 지속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Means of Implementation and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6차	6월 22-25 (4일간)	결과 문서 확정
7차	7월 20-24 (5일간)	결과 문서 확정
8차	7월 27-31 (5일간)	결과 문서 확정

한편 유엔은 2015년 7월 13-16일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지속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동원 방안을 논의한다. 동시에 유엔은 2015년 11월 30-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목표와 실천 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7월 개발재원 회의는 현재 지속발전목표 17번의 이행수단에서 개발재원을 다루고 12월 파리 회의는 지속발전목표 13번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목표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의 논의에 따르면 9월 총회 기간 중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목표와 세부목표만 확정하

고 지표 (indicator)는 이후 유엔의 통계관련 기관이 전문가와 함께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각국은 글로벌 성격을 지니는 목표와 세부목표를 참조하여 2016년 국별 세부목표와 지표를 작성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글로벌 목표와 세부목표는 2015년 9월에 채택될 예정이지만 2016년 국별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지속발전목표가 국내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되어 실시되는 것은 2017년부터라고 예상할 수 있다.

2014년 7월 지속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이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과연 그대로 9월에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영국 등 일부 국가가 대중적으로 소통하기 쉽도록 목표 수를 10여개로 줄이자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목표간 중첩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목표간 통합성과 일관성 제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행기제는 총론 차원에서 합의되었지만 각론에 들어갈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그리고 주요 국가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ODA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개도국 내에서 세금 등 국내재원확보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입장차이를 아디스아바바 회의에서 어떻게 줄여 합의를 이룰 것인가는 지속발전목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행수단에서 개별 목표별 이행수단을 수립하자는 개도국과 이행수단을 독립목표로 총론적으로 설정하자는 선진국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15년 한국에서는 모두 세 개의 지속발전목표 내용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4월 8-10일 인천 송도에서 유엔 개발협력포럼(DCF)의 고위급 심포지엄이 열리고 이어 4월 12-17일 대구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World Water Forum), 그리고 5월 19-22일 인천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이 개최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는 각각 지속발전목표 17번의 ODA 등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6의 물과 위생, 목표 4인 교육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정부는 리우+20 회의 과정과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다.

특히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서울개발의제 제안,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국으로 부산파트너십 창출 기여, 2012년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화,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송도 유치, 2014년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결정 등 일련의 조치와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

발협력 분야에서 리더십 위치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국제적 책무성이 높아져왔고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역량 또한 증대해왔다.

한국정부는 지속발전목표 협상 과정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행 모니터링 체계에 연계시켜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교육 관련 목표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농촌지역개발 경험과 ICT를 이용한 효율적 전자행정 및 거버넌스 경험 공유, 포용적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과 불평등 해소, ODA의 지속적 증대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위를 구성하여 한국의 중점 기여분야를 선정하고 섹터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적으로 2015년은 제1차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2011-2015)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5개년 계획 (2016-2020)을 수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2년 시행했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첫 동료평가 (Peer Review) 결과 이행에 대한 중간평가가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17번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국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발전목표와 국내 정책과의 연계 및 일관성을 위해서는 현행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정책 프레임이 지속가능발전과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유엔의 지속발전목표 수립을 계기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 또한 본격적인 협상을 대비해서 국제시민사회 특히 아시아개발연대 (ADA) 등 아시아의 개발협력 단체와 협력하여 애드보커시와 로비 입장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발전목표의 효과적인 국내화를 위해 개별 목표와 관련된 국내의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발전목표 제정의 중요성과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사회 및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은 빈곤과 기아 및 불평등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MDGs에 비해 방대하고 상호연결된 복잡한 내용을 지닌 지속발전목표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시민

사회-기업-과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2015년 유엔의 지속발전목표 수립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에게 기존의 한국 발전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혁하며 동시에 지구촌 빈곤과 기아 종식과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 도전과 기회해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4), Post-2015분과 이슈브리프 제11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4), Post-2015분과 이슈브리프 제12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4), Post-2015분과 이슈브리프 제13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4), Post-2015분과 이슈브리프 제14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2014), Post-2015분과 이슈브리프 제15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외(2014. 12. 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이행 논의
를 위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세미나 자료집.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제19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성훈 (2014), Post-2015 개발의제란 무엇인가? Issue Brief action/2015 Korea.

임소진(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임소진(201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
슈 제10호.

임소진(2013),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KOICA 정책과 이슈 제12호

AFRODAD et. al. (2014),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Negotiations?: What
Outcomes Should Be Agreed in Addis Ababa in 2015?, FfDPosotion Paper - CSO
Networks.

Birdsall, Nancy (2014. 12. 05), "Growth As the Cornerstone of the SDG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Frecheville, Neva (2014. 12. 18), "Thoughts on the UNSG's Post-2015 Synthesis
Report", Serpents and Doves: A Development Policy Blog.

IMF (2014),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IMF Policy Report.

Open Working Group (2014),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General Assembly.

UN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UN (2014. 12. 09) "Announcing New Synthesis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SG Press Release (SG/SM/16396-GA/11596-DEV/315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내용과 의의

| 인 쇄 | 2015년 2월 26일
| 발 행 | 2015년 3월 4일
| 집 필 진 | 김태균, 이성훈, 허태욱, 황원규
| 편 집 인 | 이성훈, 이현아
| 발 행 처 |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전 화 | 02-766-5623
| 팩 스 | 02-765-9731
| 웹사이트 | www.mdgkorea.org
| 후 원 | KOICA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후원단체와 발행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KOREAN NGOs' NETWORK against GLOBAL POVERTY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